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년 4월 1일

나.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0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5.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조례안은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련 법령 검토 내용을 보면,
 - 지난 2019년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 한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 면책 및 징계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특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그동안 공직사회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부족하여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되었으나,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일

발 의 자 : 정선희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2조)
- 다.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안 제3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집행
- 다. 입법예고(2019.2.19.~2.23.)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